

'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법리해석 논쟁

지난 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법리해석을 놓고 한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일제 때의 피징용자에 대한 피해보상과 미지급입금을 비롯한 각종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정부 간에는 법적으로 일단락됐으나 민간차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애매한 태도를 취해온 데 대해 이수인 의원(민주)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논쟁은 시작됐다.

정치권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의 본질적인 모순을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 대처를 촉구한 것은 이 협정이 체결된 이래 처음 있는 일로, 일본 현지에서 연일 증폭되고 있는 한국인 정신대 및 강제징용자 피해의 실상 보도와 맞물려 청구권 문제의 새로운 접근이 모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구권협정의 법리해석과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이 의원의 문제제기는 지난 13일 국

거부 △원폭피해자에 대한 치료 배제 △문화재 반환 회피 등 미해결 쟁점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지금까지 청구권협정을 확대해석하는 오류를 저질러 결국 재일한국인과 사할란 거주 한국인 등을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는가 하면 일본 정부에 사할란 피징용 한국인의 귀환문제와 같은 비제산적 의무도 면제해주었다며 정부의 협정해석 태도를 문제삼았다.

그는 특히 피징용자 청구권 해결에는 전혀 새로운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법상으로 식민지 지배나 전쟁 등과 같은 경우 배상과 보상문제는 국가간의 일괄타결 방식이 도입되지만, 피해자의 본국이 가해국에 대해 자국민이 침해당한 권리의 구제를 주장하지 않거나 소극적일 때는 가해국은 국제적 교섭 의무를 지지 않게 되며, 국내적으로도 국제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상례"라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제 및 일시 귀국은 그간 일본 정부와 교섭해왔으며, 역사적 배경과 인도적 배려의 입장에서 일본 정부는 사할란동포의 모국 방문비로 91년까지 약 2억9천만 엔(누계)을 지원해왔다"며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및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는 일본측의 적극적인 조치를 계속 촉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외무부는 "현재까지 20만여명의 한국인 강제징용자 명부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사정변경의 원칙'에 입각해 일본과 제2의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청구권협정은 체결 당시 구체적인 피해자 명부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므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가해국 일본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관련해 "전후 처리과정에서 일본은 한국을 국제적으로는 일본의 일부로 보아 전쟁 당사자에서 제외했고, 국내적으로는 일본에서 독립한 외국의 범주에 넣어 모

"정신대·피징용자등 추가보상을"

7/3

이수인의원 "정부 책임 방기" 문제제기

1991. 12. 19

외무부 "양국 법적 매듭" 입장고수

회 외무·통일위가 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의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상욱 외무장관에 대한 질의 형식으로 이뤄졌는데 당시 질의내용이 방대해 외무부는 최근 장문의 서면답변서를 이 의원에게 별도로 전달했다. 외무부의 서면답변서는 몇가지 분야에서 이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고 있으나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기존의 태도를 고수하는 가운데 이 의원의 논리를 공박함으로써 이 의원 쪽의 맞대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의원측은 이번 정기국회가 18일로 일단 끝났지만 앞으로 있을지 모를 임시국회에서 청구권협정과 관련한 모든 문제점을 놓고, 정부의 태도변화가 있을 때까지 추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청구권협정을 둘러싼 공방의

한국인 피해자들의 보상문제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외교적 보호권 행사경향과 직접 관련이 있고 이는 정부의 새로운 인권침해이자 책임방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주장과 백 교수의 연구성과를 종합하면 결국 정부가 청구권협정에 의해 한국인의 피해보상이 완전히 종결됐다고 간주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청구권협정과는 별도의 추가보상 교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무부는 서면 답변에서 "피징용자에 대한 피해보상, 미지급 입금을 비롯한 각종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정부 간에는 법적으로 일단락됐고 정부 차원에서는 새롭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렵다"고 전제하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든 전후보상을 거부했는데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왔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외무부는 "강제 징용될 때는 일본인 자격으로 희생되고 피해보상의 대상이 됐을 때는 일본국적을 박탈했던 일본이 피해 한국인의 국적을 이유로 한 전후보상 거부는 옳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고 "그런 관점에서 한-일 간 재일동포 문제와 관련한 회의에서 일본인과 동일한 대우를 요청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정부 주장이 수용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외무부는 정신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가토 관방장관이 최근 "일본 정부는 잘 모른다"는 식의 발언을 한 데 대한 대책이 무엇이나 추궁에 대해서는 "일본의 과거에 대한 인식에 미흡